



##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방안」 마련 추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주요 업종의 중소하도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거래상지위가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계약체결과정에서부터 대금지급과정에 이르는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전반적 거래실태와 법집행 방향

#### 〈현황 및 문제점〉

건설 및 제조업 매출액 중 하도급거래가 50% 내외를 차지하며, 하도급업체는 매출액의 82%를 모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99년 이후 매년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와 자금시장 호전에 따라 범위반 업체가 감소(89.3%→62.8%)하고 현금성 결제가 대폭 증가(34.8%→78.5%)하고 있다.

한편, 1차 단계의 하도급거래질서는 비교적 좋아진 반면 2~3차 단계에서는 범위반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 〈법집행 방향〉

2004년에는 조사대상을 4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2007년까지 7만개로 단계적으로 확대, 원·하도급업체 병행조사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범위반을 사전에 방할 계획이고, 상습위반업체와 범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하도급법 준수의를 제고하고 납품관련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입업체 수를 500개('07년)로 확대('03년 101개)할 방침이고, 현재 15개 분야에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자사브랜드제품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 2. 거래계약체결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은 가격과 품질이 중시되고 청탁이나 연고주의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실시하고, 자동차, 전자 등 가격경쟁이 치열하거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투명한 기준에 의거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뇌물제공, 외부청탁,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처 결정, 거래계약 체결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

### 〈개선대책〉

뇌물제공, 청탁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거래계약 체결의 피해사업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부당한 고객유인」 조항이 있으나 뇌물 등에 의한 계약체결의 위법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미국의 경우 클레이튼법에 의해 상업적 뇌물(Commercial bribery)로 인한 경쟁사업자 피해의 구제를 인정),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가칭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거래를 심사·승인하도록 유도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근거한 업체평가기 원·하도급업체간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선정이나 납품단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투명하게 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3. 하도급대금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내수부진,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인해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일수록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 부담을 단기인하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원·하도급업체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등록제 전환(99년) 이후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입찰참가로 저가하도급과 불법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단기인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피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 〈개선대책〉

주요 업종별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압력을 제고하고, 주요 원사업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임금상승률, 완제품 가격상승률, 납품단가 상승률을 비교평가, 공개(04년초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발표)하여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상승 등 원가상승 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견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감시를 강화하는데, 자동차, 전자 등 납품단가 변동이 크거나 원사업자의 임금인상률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교부 등 대형 발주처와 저가하도급에 대한 자료공유로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질서를 확립하고 원·하도급업체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공시원가에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촉진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 하도급 허위 통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저가하도급과 불법다단계 하도급거래의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 4. 하도급거래 규율체계의 보완·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하도급법 적용분야가 제조, 건설업에 국한되어 있어 운송, 광고 등 실제 하도급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용역업의 불공정 하도급 규제가 불가능하며, 하도급법 적용대상 원사업자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하도급업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 홈쇼핑 납품과정에서 부당반품, 부당감액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규모 소매점고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개선대책〉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04년중 연구용역 및 법개정 추진)하고, 제조와 건설업에 국한되어 있는 법적용 분야를 운송 등 용역거래까지 확대하며, 법적용 대상 원사업자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 국민경제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용을 확대하여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소매점고시를 개정, 홈쇼핑업체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매출 급증과 더불어 증가하는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하도급법 적용범위	서면실태 조사 대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비율
(현재) 16%→ (2007년) 77%	(현재) 35천개→ (2007년) 70천개	(현재) 63%→ (2007년) 43%	(현재) 78%→ (2007년) 82%	(현재) 7.5%→ (2007년) 30%